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
http://www.mke.go.kr

보 도 자 료

2010년 11월 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전기위원회 박진서 전력시장과장, 최재흥 사무관(2110-5522)
전기위원회 최형기 전력계통과장, 김종달 사무관(2110-4949)

저압공급범위 상향, 정전피해배상 범위 확대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

- 저압공급범위를 100㎾ → 500㎾로 대폭 상향
- 한국전력의 경과실로 인한 정전 피해도 배상토록 개선
-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

□ **지식경제부**(장관:최경환)는 전기사용의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약관 운영에서 나타난 소비자 권익보호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**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임(시행일:11월 1일)**

□ **(저압공급범위 확대)** 저압공급범위를 현재 **계약전력 100㎾미만에서 500㎾미만으로 대폭 확대**함

○ 저압(220V, 380V)공급 범위를 현행 100㎾미만에서 **500㎾미만까지로 확대**하여 고객들에게 고압(22,900V)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.

○ 그동안 일부용량만 증설이 필요한 **저압고객(단독)의 경우**에 99㎾(집합건물 고객 : 199㎾)를 초과하게 되면 고압공급 대상이었으나,

- 제도개선에 따라 **고압수전에 따른 초기 수전설비 설치비용의** 부담 없이 저압공급이 가능하게 됨.

＊ 고압수전설비 설치비용 : (200㎾기준) 약18백만원, (500㎾기준) 약26백만원
＊ 전체 100㎾～500㎾ 고객 수('09년말기준) : 약 97천 고객

○ 금번 개정으로 연간 증설수요가 있는 6천호 고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, 국가적으로는 약 840억원의 변압기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

* 절감액(추정) : 840억원 [=대상가구 6,000호 × 절감액 14백만원(고객시설 부담비용 26백만원 - 한전설치시 비용 12백만원)]

○ 다만, 저압으로 공급받을 경우 고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단가는 높아지므로, 고객이 고압과 저압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○ 저압공급범위는 '83년 약관 개정시 규정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·사회적 여건 변화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27년만에 개정함

<저압공급범위 개정전후 비교>

계약전력	현행	개정후
100kW미만	저압 대상	저압 대상
100kW ~ 500kW	고압 대상	저압, 고압 선택 가능
500kW이상		고압 대상

* 고압 사용(22,900V 이상)을 위해서는 고객이 수전설비(변압기 등) 설치 필요

□ **(정전피해배상 확대) 한국전력의 경과실(輕過失)에 의한 전기공급 중지시에도 정전피해 배상**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

○ 종전 약관은 "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"에만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과실에 따른 한전의 정전피해 배상을 면책하여 왔으나,

○ 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정전피해 배상의 발동조건을 "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"로 하여 **경과실**(輕過失)로 인한 정전피해 배상도 가능하도록 배상기준(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)을 마련함.

○ 금번 정전손해배상 기준 강화의 의미는 비록 배상한도액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, 한국전력이 경과실에 의한 정전피해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점에 있음

○ 금번 개정시 정전손해배상기준은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로 규정하였으나, 이 배상기준은 잠정적으로 도입한 기준이며, 추후 해외사례 조사,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'11년에 적정한 수준의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임

* '09년 정전 : (건수) 1,449건, (연간 정전시간) 16분, (최소정전비용:추정) 34조원

□ **(오피스텔 계약종별 적용기준 명확화) 주거용 오피스텔**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○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종별이 실제 전기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계약종별 적용기준을 명확하기 위해 개정함.

-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업무용일 경우 일반용 전력요금을,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전기에 대해서는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기 위한 것임

○ 그간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왔으나,

-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사용용도를 확인한 후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

* 오피스텔 현황('10) : 148,270호 (일반용 70,360호, 주거용 77,910호)

○ 신규오피스텔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기존 오피스텔 고객에 대하여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'11.7.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.

* 기존 오피스텔고객은 계약종별이 확인, 조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약관에 따름

□ 금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은 **'10.10.28일 개최된 전기위원회의 심의 및 지식경제부 인가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**하게 될 예정임

※ 첨부 : 전기공급약관 개정 주요내용

참고 전기공급약관 개정(안) 주요내용

1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

1) 저압공급범위 확대로 고객선택권 부여(제23조)

○ 저압(220V, 380V)공급 범위를 현행 100㎾미만에서 **500kW미만까지로 확대**하여 고객들에게 고압(22,900V)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.

○ 일부용량만 증설이 필요한 **저압고객의 경우**에 99kW(단독고객) 또는 199kW(집합건물 고객)를 초과하게 되면 고압공급 대상이었으나,

- 제도개선에 따라 **고압수전에 따른 초기 수전설비 설치비용의** 부담 없이 저압공급이 가능하게 됨.

＊ 고압수전설비 설치비용 : (200㎾기준) 약18백만원, (500㎾기준) 약26백만원
＊ 전체 100㎾～500㎾ 고객 수('09년말기준) : 약 97천 고객

○ 다만, 저압으로 공급받을 경우 고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단가는 높아지므로, 고객이 고압과 저압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

2) 정전 피해배상제도 개선(제49조의2)

○ 종전 약관은 정전피해 배상의 발동조건을 "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"로 하여 경과실에 따른 한전의 정전피해 배상을 면책하여 왔으나,

○ 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정전피해 배상의 발동조건을 "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"로 하여 **경과실**(輕過失)로 인한 정전피해 배상도 가능하도록 배상기준(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)을 마련함.

3) 저압예비전력 공급제도 도입(제63조)

○ 고압고객에게만 공급하던 예비전력을 **병원, 방송국, PC방, 전산통신시설 유수지배수펌프장 및 정전 민감 중소기업 등 500kW 미만 저압고객에 대하여도 예비전력을 공급** 할 수 있도록 하여 고품질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함.

4) 고객지향적 보증제도 개선(제79조)

○ 임차인 명의의 전기사용신청시 전기요금 미납에 대비한 보증을 설정하였으나 성숙된 **신용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고객 희망시, 신용이 우량한 고객에 대한 보증조치를 면제**토록 개선함.

○ 또한 현금보증 원칙에서 **고객의 선택권을 존중**하여 **현금, 지급보증, 보증보험, 연대보증 등의 방법 중 협의 결정**토록 함.

5) 500kW미만 산업용저압 공급시, 계약종별 적용기준 신설(제59조)

○ 저압공급 대상을 500kW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전력 500kW 미만 저압공급 고객에 대하여 산업용전력(갑) 저압요금 적용조항을 신설함.

6)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약관내용 및 체계의 부분적 보완

○ 전기공급약관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고객이 약관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해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약관의 체계를 제5장에서 제9장으로 개편하였음.

○ 아울러 **전기사용신청서, 전기사용계약서,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등 기본서식을** 약관에 첨부하여 이해증진을 도모함.

7) 수급개시일과 요금의 구성내용 명확화(제6조, 제67조)

○ 수급개시일, 전기요금의 구성내용을 약관에 알기 쉽게 명시함

- 수급개시일은 한전이 전기공급설비(전주, 변압기, 계량기 등)의 시설을 완료하여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
-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

* 기본요금 :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
* 전력량 요금 :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

2 합리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제도 보완

1) 전기자동차의 충전용 전력공급기준 근거 마련(제18조의3)

○ **전기자동차 이용고객을 위한 전력시설 설치비용 최소화** 등 정부 정책의 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공급기준을 신설함.

- 전기자동차 충전전용요금 규정 마련 ('10. 8. 1 시행, 약관 특례규정)
- Smart Grid 환경도래에 따른 전기자동차, On-Line 방식인 전기충전 등 다양한 형태의 신수요에 대한 탄력적 전기공급 근거를 약관에 마련하고 세부공급기준은 세칙에 위임

2) 전기공급계약내용 변경시, 통지의무 보완(제51조)

○ 전기공급계약내용중 전기사용용도 변경(산업용→일반용) 및 계약전력 변경 등에 대해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이 통지토록 보완함.

○ 제도개선으로 계약종별의 비정상적인 사용 등에 따른 고객간 요금의 형평성 결여 해소, 계약전력 증감사용에 따른 공사비 및 전기요금 정상화에 기여

3) 전력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,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(제24조)

○ 전력설비 설치장소 제공의무와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7조(건축설비 설치의 원칙, '09.7.16)를 약관에 반영하여 전력공급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전력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함.

3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 및 적정 수익성 도모 등

1) 오피스텔 계약종별 적용기준 명확화(제56조, 제57조, 제65조)

○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종별이 실제 전기사용용도(업무용→일반용 전력, 주거용→주택용 전력)에 부합하도록 계약종별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함.

○ 신규오피스텔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다만 기존 오피스텔 고객에 대하여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.

* 기존 오피스텔고객은 계약종별이 확인, 조정되기 전까지는 개정전 약관에 따른 요금적용을 받음

2) 공사비 환불시, 이자지급률 개선

○ 고객부담공사비 정산 후 환불시에는 환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지급하여 왔으나,

○ 통상 1년 미만기간을 보유하는 고객부담공사비의 자금 활용도를 고려, 예치기간 1년미만은 보통예금이자율, 1년이상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지급토록 개선함.

3) 미납고객에 대한 연체료율 타 공공기관수준으로 개선

○ 미납고객에 대한 연체료율을 미납 첫째월 1.5%, 둘째월 1.0%로 적용하여 왔으나,

○ 고의적인 미납자의 예방목적으로 TV 수신료 5%, 타 공공재의 2~3%수준 등을 고려하여 미납 첫째월 2.0%, 둘째월 2.0%(미납 둘째월까지만 부과)의 연체료율을 부과토록 조정함.

* 저렴한 전기요금의 고의적 미납사례 발생과 이에 따른 납부독촉 통신비, 해지예고서 송달 등 관리비용 증가 등 고려
* 일반 채권의 연체료나 국세 체납금 : 실연체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부과

4) 위약금 부과기준 개선

○ 약관에 위배되어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청구

○ 최근 공공기관의 부당한 전기사용 등 고객의 약관위반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와 반복적인 약관위반고객의 도덕적 해이 억제 및 정상적인 전력사용을 위한 제재기준 강화 필요에 따라

○ 현행 위약금 배수인 3배를 유지하되, 1년이내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5배로 하여 공정한 전력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위약금 규정을 보완함.

5) 1kW미만 가로등 시설부담금 부과기준 개선

○ 계약전력 1kW미만 가로등 설치시 인입선 공사만 발생하는 경우 고객부담공사비를 면제하여 왔으나, 지중화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시, 지중 인입시설비용(약 21만원)이 지속적인 증가 등 현실여건 반영.

○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하여 계약종별고객(주택용 전력·농사용 전력 등)간 형평성 유지 및 최소 비용 보전토록 제도를 개선함

* 1kW미만 : 통상적인 가로등을 의미

1kW이상 : 아파트, 고속도로휴게소 진입로, 교량위에 설치된 가로등을 의미

6) 임시전력 공급제도 개선

○ 흥행, 임시집회, 전람회, 재해복구, 건설공사용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임시전력 사용기간에 대한 한정(限定)이 없어 무한정 사용하였으나, 임시전력에 대한 현장관리 강화 및 전기 안정성 확보 필요에 따라

○ 임시전력의 사용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다만,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전력은 건설공사기간을 인정하여 해당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.

* 일본 동경전력, 구주전력의 경우 임시전력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음

7) 계절변경시 정확한 요금계산을 위한 중간검침 대상 확대

○ 계약전력 1,000kW이상 고압고객만 계절변경시 중간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, 계기 성능이 향상되고 사용량 데이터의 확보 등에 따라 전체고압 고객까지 원격검침이 가능하게 됨.

○ 따라서 계절변경시에도 중간검침을 통한 계절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확한 요금이 산정되도록 함

* 전기요금 계절변경 월 : 6월→7월, 8월→9월, 10월→11월, 2월→3월